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 방역 관리 철저 및 명의이용 행위 관련 지도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9.2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03(2020.9.22)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입니다.
- 정부는 9.28~10.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을철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사업자단체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다중의 집합·모임에 전세버스 운행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행 자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 아울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각 17개 시·도 조합에서는 관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중이 모이는 집회에 불법 지입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만일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85조(행정처분), 제90조(벌칙) 및 제93조(양벌규정),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처분 기준. 끝.



수신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17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최이진

행정사무관

양찬윤

버스정책과장

전결 2020.9.24.  
나기호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82

(2020. 9. 2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